

부산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나46476 판결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나4647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6가단339463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

변론 종결 2019. 5. 24.

판결 선고 2019. 6. 2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6가단33946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7,315,850원 및 그 중 원고 A의 20,000,000원,

원고 B의 3,619,199원에 대하여는 2016. 9. 13.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의, 원고 B의

나머지 13,696,651원에 대하여는 2018. 11. 20.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35,8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32,8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 B의 정산금청구 부분

원고 B은 2016. 6.부터 2016. 8.까지의 정산금 3,619,1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12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보증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8,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ATM기의 설치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5. 3. 12. 원고 A이 2,000만 원, 2017. 12. 4. 및 2015. 1. 1. 원고 B이 합계 2,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점, ② 피고 회사에서 원고들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E도 위 업무를 시작할 무렵 피고 회사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E은, 이는 보증금으로 계약 종료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③ E은 피고 회사의 부탁을 받아 F과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함이 없음에도 서류만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E은 F과의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F이 아닌 피고 회사의 이사인 G로부터 2017. 1. 10.부터 2017. 4. 11.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F과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경우 수수되는 금전인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무렵 피고 회사는 창업초기로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영업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차량이나 로봇 등 유형물 역시 원고들이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각 2,000만 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손해 등을 정산한 후 반환하는 것이 약정된 보증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각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상계항변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 B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과 피고 회사가 대납한 원고 B의 트럭할부금 상당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의 트럭할부금으로 2016. 9.부터 2018. 11.까지 8,489,65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 대하여 8,489,650원의 할부금(이하 '이 사건 할부금'이라고 한다) 반환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 상계의 수동채권인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 B이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2016. 7. 31.경 그 이행기가 도래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피고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8,489,650원 상당의 이 사건 할부금 반환채권 이행기는 마지막 지급일인 2018. 11. 19.이다.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 및 피고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할부금 반환채권은 2018. 11. 19.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할부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B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8. 11. 28.자 준비서면이 2018. 11. 29. 원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아래 [상계충당 내역]과 같이 지연손해금,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증금은 13,696,651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상계충당 내역] 상계적상일 2018. 11. 19. 기준 잔존 원리금채무 상계충당

● 8,489,650원 상당의 트럭할부금 반환채권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이행청구 다음날) 2016. 9. 13.부터 상계적상일인 2018. 11. 19.까지 798일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186,301원(= $20,000,000\text{원} \times 0.05 \times 798/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하면, 6,303,349원(= 8,489,650원 ~ 2,186,301원)이 남는다.

● 위 나머지 6,303,349원 상당의 트럭할부금 반환채권을 위 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원에 충당하면, 13,696,651원(=20,000,000원~6,303,349원)이 남는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17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정산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6, 7,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에 대하여 2017.

6.분(2017. 5. 16.부터 2017. 6. 14.까지) 2,677,199원, 2017. 7.분(2017. 6. 17.부터 2017. 7.

15.까지) 1,658,150원, 2017. 8.분(2017. 7. 18.부터 2017. 7. 20.까지) -716,150원 합계

3,619,199원의 정산금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정산금

3,619,1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3,000,000원, 원고 B에게 20,315,850원(= 13,696,651원 +

3,000,000원 + 3,619,199원) 및 그 중 각 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다음날인 2016. 9. 13.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

A의 20,000,000원, 원고 B의 3,619,19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다음날인 2016. 9.

13.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원고 B의 13,696,651원에 대하여는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일부 항소는 이유 있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휴옥

판사김지희

판사배준익